#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8

발의연월일: 2020. 7. 10.

발 의 자:이종성・임이자・배현진

안병길 · 권명호 · 이태규

정진석 · 김석기 · 김성원

전봉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의료기관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등에 대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고의무대상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결과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 아 교육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관리를 강화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59조의4제7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6항 중 "한다"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조치 및 제6항에"를 "조치, 제6항 및 제7항에"로 한다.

① 제2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 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 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 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 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며, 그 결과 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신 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 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 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방법 등의 안내,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에 따른 교육 내 조치, 제6항 및 제7항에-----용 · 시간 · 방법 등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